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26 선고 2017가합504690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

담당변호사 정우근

피 고 주식회사 A

변론 종결 2018. 6. 5

판결 선고 2018. 6. 26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57,158,564원 및 그중 135,109,762원에 대하여는 2016. 12. 22.부터, 121,279,810원에 대하여는 2016. 12. 23.부터 각 2017. 5. 17.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◇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3건의 신용보증계약(2015. 10. 8. 1건, 2016. 9. 20. 2건)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B(이하 방이라고 한다)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, 피고가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지체하여 원고가 2016. 12. 22. B에 136,311,822원, 2016. 12. 23. 중소기업은행에 121,279,810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청구

○ B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 135,109,762원(= 136,311,822원 - 원고가

회수한 1,202,060원),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21,279,810원, 확정손해금 652원, 위약금 499,310원, 대지급금 269,030원의 합계 257,158,564원

○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 2017. 5. 17.,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0%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재판장 판사 이 원판사 나 경판사 정순열